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28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윤재옥・이인선・정희용

김기웅 • 최수진 • 김소희

이주영 · 김은혜 · 박성민

김상훈 · 이달희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 2월 31일까지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취득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종합부 동산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 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음.

그러나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기 위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 립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8조의9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98조의9(수도권 밖의 지역에 제98조의9(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동산세 과세특례) ① 1주택을 동산세 과세특례) ① -----보유한 1세대(「소득세법」 제 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)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<u>2025</u> -----2028년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2월 31일-----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(이 하 이 조에서 "준공후미분양주 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한 후 준 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 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 1항제3호를 적용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(「종 합부동산세법 |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 -----2028년 12월 31일----

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	
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	
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	
세대 1주택자로 본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